

# 언어대조언어교육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언어대조·언어교육연구소(Language Contrast and Language Education Research Center,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화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개별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언어 간 대조, 제2언어 교육에 확장함으로써 언어학 분야 연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조언어학, 언어유형론, 제2언어습득, 제2언어교육, 다문화가정 언어교육을 연구 주제로 삼아,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 기반 제공
2.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3. 정기 세미나, 워크숍 및 테마별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소속 연구자의 자기 계발 및 연구 성과 교류
4. 교내 및 교외 학부 및 대학원에 본 연구소의 성과물을 공유하여 언어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개발
5. 언어학의 영역별 전문 연구자 육성을 통한 잠재적 연구역량 강화
6. 해외 연구자 초청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 사업 정례화
7. 문현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8. 연구서, 대중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등의 발간을 통한 허브 연구소로서의 기능
9. 유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 증대
10.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시행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는 소장 1인과 5인 이상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소장과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임원은 교내·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지원부장, 학술연구부장 및 대외협력부장은 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 및 행정 활동을 총괄한다.

⑤ 본 연구소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원부, 학술연구부, 대외협력부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특수사업부를 둘 수 있다.

1. 연구지원부 : 연구소의 행정관리, 기획, 학술, 재정, 시설 및 공통 기자재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학술연구부 : 연구과제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3. 대외협력부 : 연구소의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

제6조(연구원의 자격)

본 연구소 연구원의 자격 등은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조직 및 운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연구지원부장, 학술연구부장, 대외협력부장 및 약간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연구소의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약간 명의 연구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의 조직,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3. 본 연구소의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

4. 연구원 등의 인사 추천
5.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감사

제9조(재원) 본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 국공립 기관의 용역 사업비
2. 본교의 연구소 지원비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금 및 기타 수익금

제10조(회계)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로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